



2022 ~ 2023년도
행정감사 사례집
- 분야별 -

2024. 4.



한극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CONTENTS

I	제1장 수업 · 시험관리 분야	1
II	제2장 학생 · 학적관리 분야	6
III	제3장 복무 · 서무관리 분야	8
IV	제4장 회계관리 분야	13

제 1 장

수업 · 시험
관리 분야

1. 출석수업 강사 위촉 부적정

《지적 2건》

2018학년도에는 전(前)학년도 동일 학기 출석수업 강의평가결과 평균 하위 10%미만인 강사는 해당 지역, 해당 교과목 위촉을 배제하도록 되어있고, 2019학년도에는 전 학년도 동일 학기 출석수업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강사수급이 어려운 경우(평점 3.8이상)와 평점 4.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지역대학장 판단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근 거 「2018학년도 출석수업 운영계획」
「2018. 1학기 출석수업 강의평가 결과 알림」
「2019. 1학기 출석수업 운영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 1학기 ~ 2021. 1학기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전 학년도 강의 평가 결과 하위 10% 미만인 자에 해당되어 위촉이 제한된 ○○○ 등 6명의 강사에 대하여 학과 추천을 사유로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8. 2학기과 2021. 2학기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전(前) 학년도 동일 학기 출석 수업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 미만자 중 평가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3.3점) 등 5명을 강사로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2. 각종 시험 외부 감독관 위촉 부적정

《지적 1건》

외부 감독관 자격 <우리대학(법인 포함)은 현직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 시 인근 협력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위촉> 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대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기말시험 시행계획」
	「동하계 계절수업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해당 기관 공문 추천 후 위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대학장 결재로 외부 감독관을 위촉하여 '20학년도 동계 계절수업시험부터 현재 '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시험까지 총 10차례의 각종 시험에서 외부 감독관 위촉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총 6명의 외부 감독관 부적격 인원을 위촉한 사실이 있음.

3. 각종 시험 반편성 부적정

《지적 1건》

각종 시험과 출석수업 시험 반편성 시 대상 10명 미만 시험실의 경우 1개 시험실로 합반 하고 감독관 편성 기준은 대상 학생이 20명 이하의 경우 감독관 편성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 20명 이하도 감독관을 2명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은 사업별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되 최대한 절약' 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시말시험 시행 계획」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계획」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 2학기~2019. 1학기까지 출석수업 시험 반 편성을 하면서 10명 미만 시험실을 합반하여 편성하지 않고, 2018~2019학년도까지 각종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 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총 35회에 걸쳐 출석수업시험과 각종 시험의 시험실을 편성하면서 감독관 2명을 배정하여 시험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4. 출석수업 대체과제물 성적 처리 부적정

《지적 1건》

유아교육과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유아교육과 3학년을 제외한 수강자는 온라인 과제물 제출 시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하고, 지역대학의 해당 업무 담당자는 제출 여부 확인 후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제출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시행계획」(학기별)

< 사례 1 >

○○지역대학의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유아교육과 출석수업대체 과제물 온라인 제출자에 대한 성적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학기 1명, 2021년 1학기 3명 등 총 4명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제출자에게 성적 부여가 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음

5. 각종 시험 결시자 인정서류 관리 부적정

《지적 3건》

각종 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말추가시험(과제물)을 신청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대학으로 제출하면, 시험 담당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처리하게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제3조 「2019학년도 학업성적평가 처리지침」 「기말 결시자 추가 과제물시험 시행계획」
----	---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시험 신청자 중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승인하여 결시자 승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은 2021. 1학기 법학과 ○○○의 증빙서류 누락에도 결시자 인정 처리 하는 등 2021. 1학기~2022. 1학기까지 총 11명에 대하여 결시자 성적인정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기말추가시험(과제물)을 통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제 2 장

학생 · 학적
관리 분야

1. 교내근로장학생 선발 절차 부적정

《지적 1건》

교내 장학생 모집 시 대학(장) 및 부서장이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근로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내 근로장학생 근무 시작 전 개인정보관리서약서 등 개인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내 근로장학생 운영 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20. 3월부터 2023. 4월까지 총학생회 및 서비스센터에서 근로할 근로장학생을 총 10회(총 8명) 선발하면서 9회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를 하지 않고 임의 선발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할 교내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공고없이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 계약하는 등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6월까지 선발한 교내 근로장학생 선발 총 8건(8명) 중 6건(6명)을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없이 선발하였으면 총 8건(8명) 중 1건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는 하였으나 심사없이 선발한 사실이 있음

〈 사례 3 〉

○○지역대학은 2021년 3월 총학생회 ○○○ 등(5건)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발하지 않고 추천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임의 선발한 사실이 있으며,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근무한 교내 근로장학생 ○○○ 등 7명 전원에게 개인정보관리서약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제 3 장

인사(복무 등)
· 서무 · 보안
분야

1. 재택근무 업무실적 관리 소홀

《지적 2건》

국가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원격 근무자는 원격근무를 마치게 되면 그날의 근무 성과를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에 정리·작성하여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9조, 제10조

< 사례 1 >

○○지역대학 ○○○은 2020. 9. 14.부터 2022. 3. 11.까지 재택근무 14회를 실시한 후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업무실적보고서를 최소 3일부터 최대 16일까지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 행정서기 ○○○은 2020. 11. 26.부터 2021. 4. 30.까지 재택근무 40회를 실시한 후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업무실적보고서를 10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개인정보파일 취급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사례 1 >

○○지역대학 소속직원 7명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생산된 전자문서 중 73개 문서(919건, 주민등록번호 포함)를 보호조치 없이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년부터 생산된 전자문서 중 18개 문서 내 879건의 주민번호가 상기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음.

3. 공가 사용 부적정

《지적 1건》

건강진단, 건강검진 및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승인 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재검사), 결핵검진의 확진검사(재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결핵예방법」

< 사례 1 >

○○지역대학 ○○○은 2019. 12. 10. 및 2019. 12. 26. 14:00~17:00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 검진의 확진검사(재검사) 사유로 공가 승인을 받고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개인용 전산장비 및 전자문서의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	----------------------

< 사례 1 >

○○지역대학의 개인용 전산장비(PC)에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전자파일을 별도의 안정성 도구인 ‘전자파일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파일을 생성·보유한 사실과 전자문서 내에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안정성 도구인 ‘열람 시 암호확인’ 또는 ‘전자파일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생성·보유한 사실이 있음.

< 사례 1 >

○○지역대학의 2019. 9월부터 현재까지 전자문서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총 60건의 문서를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 없이 생산한 사실이 있음

5. 기간제근로자(일용직)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단, 30일 미만근로자는 생략 가능), 근로자 개인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고용연월일, 근로일수, 임금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코스 시스템에 해당 근로계약사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근로기준법」 제41조, 4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7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9. 9월부터 현재까지 입시 업무 등 총 73건(임금 지급 건수)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일용직)를 1일~2개월 단위로 사용하면서 임금대장을 임금지급명세서로 혼용 하였으며, 총 44건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미징구하였으며,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인 총 4건에 대해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지적 1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근 거 「건축법」 제29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04년(추정) 본관 외벽에 가설건축물(면적 25㎡)을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7. 청사관리직(계약직) 채용 절차 미준수

《지적 1건》

청사관리직 채용 시 서류·면접전형 각 단계별로 평가위원을 각각 별도로 위촉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근 거 「지역대학 청사관리직 채용 시 유의사항 안내」(행정지원과-1981, 2020. 2. 21.)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20. 12. 1.자 청사관리 계약직원(시설미화 1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장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으로 중복 위촉함으로써 채용절차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

8.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코러스시스템에 해당 근로 계약 사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근로기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일용직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행정지원과-2021. 1. 25.)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 총 148건(임금 지급 건수) 중 청사관리 근로자 ○○○ 등 23건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등 12건에 대해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2021. 1월부터 2023. 9월까지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 총 68건 중 입시업무 종사자 ○○○ 등 13건에 대해 코러스 시스템에 해당 근로 계약 사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 4 장

회계관리
분야

1. 지출원인행위 및 과목정정 처리 부적정

《지적 3건》

지출원인행위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분임 재무관: 지역대학장)이 하여야 하고, 재무관과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결할 수 없고, 해당 대리회계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국고금 관리법」 제27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0조
「매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21. 6. 15. 지출원인행위 2건(4,024,920원)에 대하여 분임지출관인 행정실장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9. 3. 11. 지출원인행위 1건(2,220,000원), 2019. 8. 30.부터 2019. 12. 2. 예산과목정정 16건(37,092,690원)에 대하여 분임지출관인 행정실장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사례 3 >

○○지역대학에서는 행정실장 ○○○ 등 2명은 2018. 11. 13.부터 2018. 12. 24.까지 예산과목 정정 29건(총175,382,970원)에 대하여 분임지출관인 행정실장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기관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전표 등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고, 교직원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근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제22조의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7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감사기간동안 14건의 카드집행 건에 대해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 없이 결제하거나 결제영수증에 서명 실명하지 아니하였고, 3건의 카드집행 건에 대해 사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지 않는 케이블카 입장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음.

3. 무인경비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지적 1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용역의 입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에(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6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역대학 무인경비용역 계약(계약기간5년)’(추정가격 66,000천원)을 경쟁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1차 연도 추정가격(13,200천원)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4. 기관카드 사용 부적정

《지적 1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전표 등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고, 교직원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근 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제2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7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감사기간동안 28건의 카드집행 건에 대해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 없이 결제하거나 결제영수증에 서명 실명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카드 집행 건에 대해 사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이 있음.

5.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포상금(310-03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격려금은 기타운영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230목)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9. 11. 11.과 2020. 10. 15. 유아교육과 교재교구전시회 시상금 집행 시 기타운영비(210-14목)가 아닌 포상금(310-03목) 과목으로 잘못 지정하여 집행(2건, 1,380천원)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업의 행사 준비를 위한 업무추진비(230목) 예산집행 시 총 4건, 총 1,973천원을 클린카드 결제 방식이 아닌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음

6.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목적·내용에 부합되게 예산과목을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 7. 21. ~ 2022. 11. 18. 현재까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냉난방기, 방송장비 등을 집행과목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총 23건 17,944,060원에 대해 예산과목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21. 4. 30. 조명기구 구입비 29,300원, 2021. 8. 31. 냉장고 수리비 80,000원 및 2021. 12. 10. 태블릿pc 수리비 116,000원 등 총 3건 225,300원을 일반수용비 과목이 아닌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였고, 2023. 1. 11. 승강기 배터리 구입비 129,2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이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7.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포상금 (310-03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격려금은 기타운영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230목)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9. 11. 11.과 2020. 10. 15. 유아교육과 교재교구전시회 시상금 집행 시 기타운영비(210-14목)가 아닌 포상금(310-03목) 과목으로 잘못 지정하여 집행(2건, 1,380천원)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업의 행사 준비를 위한 업무추진비(230목) 예산집행 시 총 4건 총 1,973천원을 클린카드 결제 방식이 아닌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음

8. 부서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적 3건》

부서운영비 집행범위는 교직원 격려 또는 조직의 단합을 위한 경비, 각 부서 운영상 필요한 경비 중 소규모적 사무용품 구입 및 물품수리비,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되어 있고, 과 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목 해소에 맞는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2018학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 9월부터 2022. 7월까지 과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기타운영비(210-14목)” 예산 성질·성격과 집행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회 간담회 46건 1,999,130원, 송별식 식비 10건 634,600원, 각종 시험 식사 등 4건 161,360원, 사회복지무요원 격려 3건 187,000원 총 63건 2,982,09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8. 7월부터 2022. 11월까지 과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기타운영비(210-14목)” 예산 성질·성격과 집행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담회(식사) 205건/16,667,89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3 >

○○지역대학에서는 2019. 9월부터 현재까지 과운영비 총 76건, 총 15,486,200원을 집행하면서 기타 운영비(210-14목) 예산의 성질·성격과 집행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간담회(식사) 명목 등으로 총 17건, 총 1,830,300원을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4 >

○○지역대학에서는 2019. 11월부터 2023. 6월까지 과 운영비 기록관리를 건별이 아닌 월별로 하였고, 부서장은 지출할 수 없는 조의에 소요되는 경비(행정실장 장모상 화환 구입비 49,000원/2022. 2. 3.)를 과운영비로 잘못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운영비(210-14목)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사 5건(529,000원)을 과 운영비로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5 >

○○지역대학에서는 2019. 6월부터 2023. 10월까지 과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간담회(식비) 60건(2,480,45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사용해야 할 1건(23,010원), 일반수용비로 사용해야 할 8건(497,690원)을 예산의 집행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운영비(210-14목)로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음.

9.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지적 1건》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각종 행사 계획 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 자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협의일 및 행사일과 카드사용일이 일치하여야 함

근 거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 제29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 제8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학위전수식 및 입학식과 관련하여 2023. 2. 21일자 업무협의 및 2023. 2. 25일자 행사 진행요원 등의 중식 제공을 위한 식사비 집행에 대해 행사일 이전인 2023. 2. 15일(2건, 562,500원)에 선 결제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10. 학교행사 격려금 지급 부적정

《지적 1건》

지출관이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근 거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9. 12. 3. 영어영문학과 MT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부서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등 [붙임] “학생 행사 격려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12월부터 2023. 4월까지 11건(15명, 1,650천원)의 학교행사 격려금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11. 공사계약 하자 보수 담보 확보 소홀

《지적 1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도록 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 각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수해야 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70조, 제72조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9. 8월 지역대학 강의실 환경개선(음향시설) 공사계약 체결 등 2019년~ 2023년까지 총 14건, 합계 83,078,120원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 발생에 대비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0. 1월 주차장 진입로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상이한 요율을 적용하고, 2021년 1월 블라인드 교체 공사 계약 등 2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실이 있음.

12. 계약체결 증빙 서류 및 대금 지급 시 구비서류 확인 소홀

《지적 1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업체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29조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9. 8월 강의실 확장 및 용역 대기실 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2019년~2022년까지 총 10건, 합계 96,702,120원의 계약체결 시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19. 7월 지역대학 홍보물품 제작 대금을 지급하면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19년~2023년 총 34건, 합계 314,961,760원에 대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